

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80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경기도 RISE 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과 대학의 협력사업의 범위 개정 필요
-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문 정비
- 대학 등 실무자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설치·운영 근거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와 지역대학의 협력사업의 범위 개정 (제4조제1항제4호·제5호·제6호)
- 나. 상생협력협의회의 구성 위원 및 임기 규정 개정 (제6조제3항 및 제4항)
- 다.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, 참석자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 (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조 례 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.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4】
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【붙임 5】

○ 입법예고 : 2025. 6. 18. ~ 2025. 7. 8. (20일간)

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6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7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4. 지역의 공공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5.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및 지역대학의 상호 개방, 지역과 대학의 연합축제 등 협력사업
6.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안산시의회 의원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 및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실무협의회)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각각 규정된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속한 담당국의 실무자,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 실무자,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참석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실무자와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중 “협의회의 운영”을 “협의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·운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평생학습과
입 안	평생학습과장	정진권
자	대학협력팀장	한영아 (369-1951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)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지역의 경제·일자리·문화·체육·관광·환경·보건 등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</u></p> <p>5. <u>교육부 등 중앙정부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한 혁신 및 특성화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	<p>제4조(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지역의 공공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</u></p> <p>5. <u>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및 지역대학의 상호 개방, 지역과 대학의 연합축제 등 협력사업</u></p> <p>6. <u>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
제6조(협회의 구성) ①·②
(생략)

③ 협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(생략)
2.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- 3.·4. (생략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6조(협회의 구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안산시의회 의원
- 3.·4.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 및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의2(실무협의회)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각각 규정된 협력사업과 협회의 협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속한 담당국의 실무자,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 실무자,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참석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실무자와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 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12조(운영 세칙) -----
----- 협의회의 운영과
실무협의회의 설치·운영-----

-----.

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-800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1일
제안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협력사업 범위 중 특정 사업명을 삭제하고,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부합하게 위원 임기를 수정하며, 개정 규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함.

□ 주요골자

- 협력사업 범위에 대해 제4호 및 제6호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경기도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제5호에 “경기도”를 추가함. (안 제4조제1항)
- 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함.(안 제6조제4항)
- 부칙 제2조 “협의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”를 신설하여 현재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도 개정된 임기가 적용되도록 함. (안 부칙)

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4. 지역의 경제·일자리·문화·체육·관광·환경·보건 등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
5. 중앙정부, 경기도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혁신 및 특성화지원에 관한 사항
6.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

안 제6조제4항 본문 중 “2년으로 하되, 2회 이상”을 “3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제1조로 하고,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협의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)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지역의 경제·일자리·문화·체육·관광·환경·보건 등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</u></p> <p>5. <u>교육부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혁신 및 특성화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</u></p>	<p>제4조(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지역의 공공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</u></p> <p>5. <u>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및 지역대학의 상호 개방, 지역과 대학의 연합축제 등 협력사업</u></p> <p>6. <u>경기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</u></p>	<p>제4조(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<u>지역의 경제·일자리·문화·체육·관광·환경·보건 등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</u></p> <p>5. <u>중앙정부, 경기도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혁신 및 특성화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</u></p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협의회의 구성)

①·②· (생략)

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
3·4. (생략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-----

-----.

제6조(협의회의 구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안산시의회 의원

3·4.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

<삭 제>

② 제1항-----

-----.

제6조(협의회의 구성)

①·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

④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3·4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3년

으로 하고, 한 차례만
연임할 수 있다.

으로 하되, 2회 이상
연임할 수 있다. 다
만, 당연직 위원 및
직위로 인해 위촉 또
는 임명된 위원의 임
기는 해당 직위의 재
임기간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
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으로 하고, 한 차례만
----- . --

----- .

부칙

<삭 제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
는 공포한 날부터 시
행한다.

제2조(협의회 위원 임
기에 관한 적용례)
제6조제4항의 개정규
정은 이 조례 시행
전에 위촉된 위원에
대해서도 적용한다.